



제435회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외국인투자 국가안보위해 조사 권한 명시 및
조사 거부·방해·기피시 제재 강화〉

■ 박상웅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709호)

2026. 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산업통상부장관의 국가안보위해 해당 여부 조사근거 마련	2
2. 조사 거부·방해·기피시 과태료를 벌칙으로 상향	6
※ 참고자료	8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박상웅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6. 2. 10.
3. 회부연월일 : 2026. 2.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투자가 국가의 안전 유지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이를 제한하고 제한 위반 시 시정명령·주식등 양도 등 사후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인이 이미 국내 법인 또는 기업이 발행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도 해당 투자가 국가의 안전 유지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신속·정밀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으나 사실관계 확인 등에 어려움이 있어 필요한 조치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미 주식등을 취득한 외국인투자까지 포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국가의 안전 유지 관련 해당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사항을 명확히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및 사후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가 경제·산업 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2항제4호 및 제35조제3호 신설).

Ⅲ. 검토의견

1. 산업통상부장관의 국가안보위해 해당 여부 조사근거 마련

개정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외국인투자의 국가안보위해 해당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제2항제4호 신설).

[표 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보고·조사 및 시정 등) ① (생략)	제28조(보고·조사 및 시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 ----- ----- -----.
1. ~ 3. (생략) ¹⁾	1. ~ 3. (현행과 같음)
<신설>	4. 이 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이미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이 발행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③ ~ ⑦ (생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1) 1. 외국인이 투자한 자금(출자목적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자본재의 도입·사용·처분에 관한 사항
2. 삭제 <2016. 1. 27.>
3. 이 법에 따라 허가받은 내용 또는 신고한 내용의 이행에 관한 사항

현행법 제4조제2항제1호2)에 따라 외국인투자는 국가의 안전과 공공 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제한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외국인투자 신고, 주무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의 검토 요청 및 산업통상부장관의 판단에 따라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안보심의를 거쳐 국가안보위해 해당 여부를 결정하고 외국인투자를 제한할 수 있음.

[표 2] 개정안 조문대비표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5조의2(외국인투자의 국가안보위해 해당 여부 결정 등)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국가안보위해 해당 여부를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u>해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 전에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사전검토를 거쳐야 한다. 1. <u>외국인이 해당 외국인투자가 제5조제1항제2호 각 목(※ 가목(외국인이 경영상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 & 나목(방위산업물자 생산 지장 등))에 모두 해당한다고 신고한 경우</u>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u>주무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의 국가안보위해 해당 여부 검토 요청이 있는 경우</u> 나. <u>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u>
--

그러나 현행법 제28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외국인투자자금 운용 및 외국인투자 허가·신고 이행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으나,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4조(외국인투자의 자유화 등) ① 외국인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외국인투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1.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2. 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

3.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과 제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외국인투자의 국가안보위해 해당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권한은 명시적으로 부여되어 있지 않음.

이에 따라 현재는 주로 외국인투자 신고 또는 허가신청 과정에서 외국인투자자가 스스로 국가안보위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신고·신청한 경우(신고서·신청서 양식-참고자료 참조)³⁾를 중심으로 국가안보위해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산업통상부장관이 적극적인 사실조사 또는 사후점검을 통해 국가안보위해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국가안보위해 여부 조사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향후 외국인투자자의 자율적인 신고에 주로 의존하던 현행 체계를 보완하여, 국가안보위해 우려가 있는 외국인투자를 보다 실효성 있게 심의·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이미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이 발행한 주식 등을

3) 외국인투자 신고·심의 및 사후조치 절차

- ① 외국인투자 신고자(외국인)가 국가안보위해 분야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신고서에 스스로 체크**(V)하여 외국인투자를 신고

* 자체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산업부에 확인 요청도 가능 (법 제5조의2제1항)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참고자료 참조)

- ② 산업통상부는 신고 수탁기관(코트라, 외국환은행 등)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아 외국인투자 안보심의에 착수 → 외국인투자위원회 소집

*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운영규정」 제3조제1항 및 제3항

- ③ 안보심의 대상임이 사후적발 → 고의, 또는 과실 여부에 따라 처벌*(고의), 시정명령**(과실) → 시정명령 미이행 시에도 처벌*** 대상

* 법 제34조(거짓서류), ** 법 제28조제5항(시정명령), *** 법 제35조제3호(시정명령 거부)

취득한 경우”도 조사대상임을 명시하고, 부칙으로 경과조치나 적용례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기존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도 국가안보 위해 여부를 사후적으로 점검·확인하려는 취지로 보임.

이에 대해 외교부는 투자국 정부와의 외교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산업통상부장관이 기존 취득 주식 등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려는 경우 사전 통보 및 협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는 입장⁴⁾이므로, 동 개정안 심사시에 이를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 4) 참고로 현재 외교부는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에 참여*할 수 있으나, 이는 조사 종료 후 형성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국가안보위해 해당 여부를 심의하는 과정임. 조사 착수 및 진행과정에서부터 외교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외교부는 “조사 착수단계에서부터 외교부 통보가 필요하며, 중대한 외교적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외교부와의 사전협의를 필요”하다는 입장임.

*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운영규정」

제5조(**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외국인투자 안보심의는 외국인투자가 국가의 안전 유지를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 **제7조의 안보심의 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를 거쳐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결정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제7조(안보심의 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외국인투자위원회는 외국인투자의 국가안보위해 사전검토를 위하여 안보심의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간사 1인을 둔다.

③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으로 하고, 투자정책관을 간사로 한다.

④ **전문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외교부**·국방부·금융위원회 및 안전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직 고위공무원**,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한 소속 공무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이 추천한 소속 직원, 전략물자관리원장이 추천한 소속 직원으로 한다.

⑤ 전문위원회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국방, 기술, 산업, 공급망, 보안, 법률 등 분야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외국인투자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⑥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2. 조사 거부·방해·기피시 과태료를 벌칙으로 상향

개정안은 산업통상부장관의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아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제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3호 신설 및 제37조제1항제5호 삭제).

[표 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기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 (생략) <u><신설></u> 3. (생략)	제35조(벌칙) ----- ----- ----- ----- ----- 1. 2. (현행과 같음) 3. <u>정당한 사유 없이 제28조제2항에 따른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u> 4. (현행 제3호와 같음)
제3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 (생략) 5. <u>제28조제2항에 따른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u> ② (생략)	제37조(과태료) ① ----- ----- ----- 1. ~ 4. (현행과 같음) <u><삭제></u> 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은 산업통상부장관의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에 대한 제재수준을 상향함으로써 조사권한의 집행력을 강화하고, 특히 앞서 도입한 외국인투자의 국가안보위해 해당 여부 조사에 대한 비협조를 방지하여 보다 면밀한 자료를 바탕으로 외국인투자 국가안보위해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에 따라 국가안보위해 우려가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사 및 심의·투자제한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다만, 법무부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사후관리 및 조사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동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함에도 불구하고, 범정부적 경제형벌 개선 노력⁵⁾과 조사거부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다른 입법⁶⁾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므로, 동 개정안 심사시에 이를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456

5) ※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5716호, 임호선의원 대표발의), 「공공차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7007호, 이소영의원 대표발의) 등 조사 거부 등에 대해 형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

6)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실태조사)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및 지원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해외사업장 및 국내사업장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하여야 한다.

제21조(과태료) ① 제9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참고

외국인투자 신고·허가신청서 양식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0. 1.>

주식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서 []허가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신고: 즉시 허가: 15일
외국 투자가	① 상호 또는 성명(영문) 개인 ☐ 외국법인 ☐ 국제경제협력기구 ☐		② 국적	
	③ 주소 (전화번호:)			
외국인 투자기업 (투자대상 국내기업)	④ 상호 또는 명칭	(국문) (영문)	⑤ 사업자등록번호(본사) (전화번호:)	
	⑥ 주소 (현주소 또는 예정지 주소)	본사 (전화번호:)		
		주공장(주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금번 투자지역(신주 취득 및 출연의 경우) (전화번호:)		
	⑦ 하려는(하고 있는) 사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세분류[신고(신청) 접수기관 기재란]			
	⑧ 자본금 (출연금)	기존 주 취득 시 그 외	취득(출연) 전 원	취득(출연) 후 원
	⑨ 경영상의 지배권 취득 []	⑩ 투자대상 국내 기업의 영 제5 조제1항제2호 나목 해당 여 부 []	「방위사업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를 생산하는 기업	☐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른 수출 허가 또는 승인 대 상 물품을 생산하는 기업	☐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가기밀 로 취급되는 계약을 보유한 기업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			☐	
※ ⑨⑩에 모두 [v] 표시를 한 경우에는 국가안보위해 여부 판단에 필요한 서류 제출				
신고 (신청) 내용	⑪ 투자형태	[]법인([]신주, []기존 주) []개인사업 []비영리법인 출연	⑫ 투자목적	[]공장 설립·증설 []사업장 설립·증설 []해당 기업(4번 기업) 인수합병 []제3기업 인수합병
	⑬ 주식등 양도자	상호 또는 성명(국문 또는 영문)(기존 주 취득 시에만 작성) (전화번호:)		
	⑭ 출자목적물 (출연대상)	[]현금, []자본재, []주 식, []부동산, []채권, [] 산업재산권 등	현금	원(USD 상당)
			자본재	원(USD 상당)
			기타	원(USD 상당)
	⑮ 금번 외국인투자금액		취득총액: 원(USD 상당)	
	⑯ 취득(할) 주식(지분)의 내용	종류	1주(좌)당 액면가액(B)	1주(좌)당 취득가액(C)
		수량(A)	액면총액(A×B)	취득총액(A×C)
	⑰ 취득 후 해당 외국투자가의 외국인투자금액 및 비율	취득총액: 원(USD 상당)		%
		액면총액: 원		
⑱ 금번 투자에 따른 예상 신규 근로자 수 명				
⑲ 취득방법(법 제5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방식으로 주식등 취득 시에만 작성) []전환사채, []신주인수권, []무상증자, []배당, []매입·상속·유증·증여, []합병·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및 회사분할, []기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신고인 또는 신청인
(또는 대리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산업통상부장관(또는 수탁기관장) 귀하

신고(신청)인 귀하

신고(허가) 번호:

[] 위의 신고를 마쳤음을 확인합니다. [] 위의 신청을 허가합니다. (허가조건:

년 월 일

산업통상부장관(또는 수탁기관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m²)